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의 대부분이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브로커들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행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현금지급)에서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정적 측면들을 해소하고,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 이비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시 포상금 지급방법 개선

-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성주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안 제1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환경정책과-8200(2008.5.15.)

-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시·군 자율실시) 알림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성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